# 경리인코너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의 업무수행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임직원의 급여나 수당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무문제가 발생하게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해외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처리

현행 소득세법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파견자의 경우도 가족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급여가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급여가 지급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해외 파견자의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월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는 내용이다.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이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파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매월의 급여총액에서 100만원을 비과세로 공제한 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2022 · 06 · 08 www.eAn\$e.com **7**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0만원] 이내의 금액
-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 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해외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해외 현지에서 과세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 과세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주자인 해외 파견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 신고납부시에 해외의 현지에서 부담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

#### ♣ 서이-1781, 2004,08,2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이 한 · 중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 당국에서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주재수당 등의 세무처리

해외지사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 교통 등 국내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에서는 급여 이외에 해외주재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한다.

해외주재 수당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거나 또는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나 회사에서 주택이나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 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